#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 1937

제출년월일: 2024년 5월 27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안이유

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징수대상시설

구 분	용마터널	강남순환로
위치	중랑구 면목동~ 구리시 아천동	금천구 시흥동~ 서초구 우면동
규 모	연장 3.5km, 왕복 4차로	연장 12.4km, 왕복 6~8차로
영업소	1개소	2개소(금천, 선암)
개통일시	2014.11.21.	2016.7.3.

구 분	신월여의지하도로	서부간선지하도로
위치	강서구 신월동~ 영등포구 여의도동	영등포구 양평동~ 금천구 독산동
규 모	연장 7.53km 왕복4차로	연장 10.33km 왕복4차로
영업소	1개소	1개소
개통일시	2021.4.16.	2021.9.1.

### 나. 통행료 인상내역

	용마터널			강남순환로		
구 분	최초 ('14.11.21)	현재	2024년	최초 ('16.7.3)	현재 (2024년)	2024년
소 형	1,500	1,700 ('23.7.1)	1,700	1,600	1,800 ('23.7.1)	1,900
중 형	2,500	2,600 ('20.4.1)	2,900	2,800	2,900 ('20.4.1)	3,200
대 형	3,200	3,300 ('20.4.1)	3,800			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Э н	신월여의지하도로		서부간선지하도로		로	
구 분	최초 ('21.4.16)	현재	2024년	최초 ('21.9.1)	현재	2024년
소 형	2,400	2,600 ('23.7.1)	2,700	2,500	2,700 ('23.7.1)	2,800

※ 경차 : 50% 할인 적용.

### 다. 통행료의 산출기초

-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(붙임-2 참조)

라. 징수기간 : 2024.07.01.부터

마. 통행료 징수방법 :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(ETCS)징수 방식 혼용

바.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

-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(붙임-4 참조)

사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: 붙임-5 참조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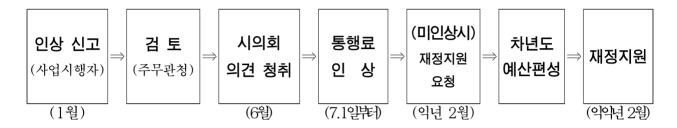
나. 예산조치 : 통행료 인상 연기('24.4월→'24.7월)에 따른 2025년 약24억원 예산 편성

※ 작성자 :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혁신팀 이상원 (☎ 02-2133-8075)

#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

### 1. 통행료 인상 절차 및 산정방법

○ 인상 절차



- 통행료 산정방법(100원 단위 절상 또는 절하)
  - 통행료 = 기준 통행료 ×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

### 2. 2024년 통행료 산출내역

#### 【용마터널】

○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1.4월부터 '23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은 171.45%, 중형·대형 차종 인상 대상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소형	중형	대형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1,000.00	1,700.00	2,200.00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171. <sup>45</sup> %		
'01.04월 소비자물가지수*		65. <sup>74</sup>		
'23.12월 소비자물가지수*		$112.^{71}$		
2024년	산정통행료	1,714.48	$2,914.^{82}$	3,772. <sup>86</sup>
	적용통행료	1,700	2,900	3,800

\* 출처 :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, 2023.12.

#### 【강남순환로】

○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0.11월부터 '23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은 177.06%, 모든 차종 인상 대상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구 분	소형	중형	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분(실시협약)	1,067. <sup>48</sup> 1,814. <sup>72</sup>		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	177.06%		
	'00.11월 소비자물가지수*		63. <sup>66</sup>		
	'23.12월 소비자물가지수*		112. <sup>71</sup>		
	2024년	산정통행료	1,890.09	3,213. <sup>16</sup>	
	2024년 	적용통행료	1,900	3,200	

\* 출처: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, 2023.12.

#### 【신월여의지하도로】

○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7.2월부터 '23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146.34%로 인상 대상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소형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1,862.00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146.34%
'07.02월 소비자물가지수*		77. <sup>02</sup>
'23.12월 소비자물가지수*		112. <sup>71</sup>
2024년	산정통행료	2,724.93
	적용통행료	2,700

\* 출처 :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, 2023.12.

### 【서부간선지하도로】

○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7.7월부터 '23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144.25%로 인상 대상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구 분	소형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분(실시협약)	1,923.66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	144. <sup>25</sup> %
	'07.07월 소비자물가지수*		78. <sup>13</sup>
'23.12월 소비자물가지수*			112. <sup>71</sup>
	2024년	산정통행료	2,774.92
		적용통행료	2,800

<sup>\*</sup> 출처 :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, 2023.12.

# 3. 차종 구분

구 분	대상차량 제원
소 형	승용차, 15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
중 형	16인승 이상 대형버스, 2축 이하, 2.5톤 이상~10톤 이하 화물차
대 형	3축 이상, 10톤 초과 화물차
경 차	배기량 1,000cc 미만 경자동차, 길이 3.6m이하, 너비 1.6m 이하, 높이 2.0m 이하

# 4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

가. 면제 대상(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1호)

구 분	면제 대상		
유료 도로법	<ul> <li>○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</li> <li>○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</li> <li>○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국가유공자(1~5급) 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</li> </ul>		
서울시	○ 시·구 제설차량(제설기간, 11.15~익년 3.15) ○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		

# 나. 감면 대상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)

구 분	감면 대상	감면율		
경자동차	○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	50%		
전기자동차	○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차량	50%		
장애인 차량	○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 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국가유공자 차 량	○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5·18 민주 유 공 자	○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 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·18민주화운 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	○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*비영업용 차량(시행규칙 제5조제4항) : 2.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				

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# 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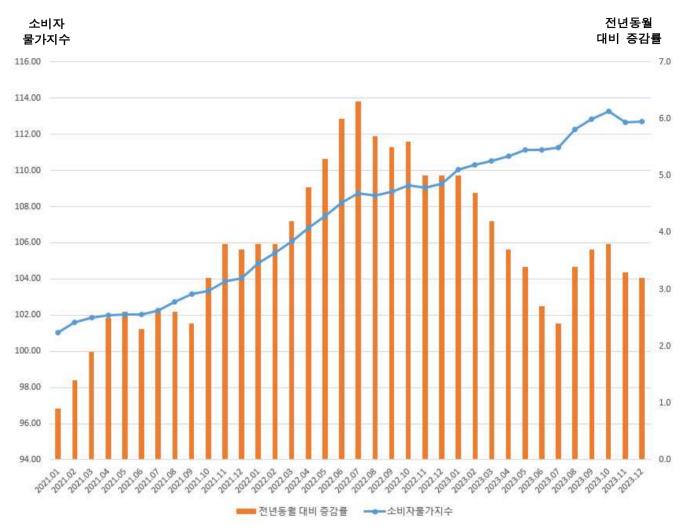
○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# 5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

관리청	시 설 명	<b>연 장</b> (km)	통행요금
서울특별시	우면산터널	2.96	소형·중형 : 2,500원
경기도	수석~호평	11.2	소형 : 1,600원, 중형 : 3,200원 대형 : 4,000원
경기도	일산대교	1.84	소형 : 1,200원, 중형 : 1,800원 대형 : 2,400원
강원도	미시령터널	3.69	소형 : 3,400원, 중형 : 5,800원 대형 : 7,500원
대구광역시	대구남부순환도로 (앞산터널로)	10.44	소형 : 1,700원, 대형 : 2,400원
경상남도	마창대교	1.70	소형 : 2,500원, 중형 : 3,100원 대형 : 3,800원
경상남도	창원~부산	22.48	소형 : 2,200원, 중형 : 3,200원 대형 : 4,200원

<sup>※</sup> 통행료는 2023.12.31. 기준임

# 6. 소비자물가지수 추이



※ 출처 :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, 2023.12.